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1. 28 선고 2020가단920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1. 21.

판결 선고2021. 1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4,6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1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, "채권자"는 "원고"로, "채무자"는 "피고"로 본다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봉규

별지